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1.



여 성 가 족 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7조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 당 없 음

다. 합 의 : 기재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성가족부령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보건위생품물품 신청 등)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보건위생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u>보건위생품</u>물품 신청 등) 1.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u>보건위생물품</u>”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u>보건위생물품</u>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u>보건위생물품</u>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u>생리용품</u> 신청 등) 1.----- ----- -----<u>생리용품</u>.----- -----<u>생리용품</u>----- ----- ----- ----- ----- ----- ----- ----- ----- ----- 2. ----- <u>생리용품</u> ----- ----- ----- ----- ----- -----

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따른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

3. (현행과 같음)

4. - 생리용품 -----

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232